

2026학년도 제10차

규정심의위원회

- 일 시: 2026. 8. 6.(목), 오전 10시
- 장 소: 기획팀 회의실(문화관 204호)



회의 개요 및 안건

- ◎ 일 시: 2026. 8. 6.(목), 오전 10시
- ◎ 장 소: 기획팀 회의실(문화관 204호)
- ◎ 안 건

연번	안건	입안부서	배석	예상시간
1	심의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 건	RISE사업단	운영지원센터장	'10
2	심의 「진천RISE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 건	진천RISE사업단	통합관리센터장	'20
3	심의 「교직원보수규정」 개정 건	예산팀	예산팀장	'10
4	심의 「교직원성과급지급규정」 개정	예산팀	예산팀장	'10
5	심의 「대학원 학칙」 개정 건	교학팀	교학팀장	'10
6	심의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건	학사관리팀	학사관리팀장	10
7	심의 「직제규정」 개정 건	기획팀	기획팀장	'10
8	심의 「소수집단 학생 지원규정」 제정 건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장	'20

◎ 추후 일정

심의기구(순)	일정
교무위원회	- 2026. 8. 11(화)
대학평의위원회	- 학칙 해당
법인이사회	- 직제, 인사, 보수에 관련한 규정 해당
차기 규정심의회의	- 2026. 8. 20.(목), 오전 10시 예정

※ 학칙 및 직제규정: 입안예고공청회 3일 이상 의견조회 시행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 운영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RISE사업단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로 재구조화를 추진함에 따라 사업단 공식 명칭 및 관련 규정의 변경 필요 • 사업명 변경에 발맞추어 ‘앵커사업단’ 으로 변경하고, 하부조직 및 산하 위원회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적 혼선을 방지 • 운영지원본부 내 「행정지원센터」 명칭이 진천캠퍼스 대학본부 「행정지원센터」 조직과 동일하여 조직체계의 명확성과 명칭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우석대학교 직제규정」 제5조(총장 직속기관) •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 운영 규정」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교육부, 2026.04.)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5조, 제3조, 제4조, 제11조의2,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로 변경 - 사업단명, 사업명 및 각종 위원회명 변경 : ‘RISE’ → ‘앵커’ 로 변경 • 제24조(포상): 잘못 표기된 부분 정정 → 제26조(포상) • 제5조, 제16조, 제22조, 제23조: - ‘행정지원센터’ → ‘운영지원센터’ 로 변경 - ‘행정지원센터장’ → ‘운영지원센터장’ 으로 변경			
기대효과	• 교육부의 새로운 체계인 ‘앵커 사업’ 명칭을 규정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 및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 • 사업단 명칭을 비롯해 심의·의결 기구와 실행 조직의 명칭을 ‘앵커’로 일원화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소통 오류 감소 및 앵커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우석대학교 <u>RISE사업단</u> 운영규정	우석대학교 <u>앵커사업단</u>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 <u>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u> 」에 따라 운영되는 우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u>RISE사업단</u>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와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 <u>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앵커)</u> 」에 따라 운영되는 우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u>앵커사업단</u>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와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u>RISE 사업</u> 2~6. (생략)	제3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u>앵커사업</u> 2~6. (현행과 같음)
제2장 조직	제2장 조직
제4조(단장 등) ①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u>RISE사업단장</u> (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④(생략)	제4조(단장 등) ①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u>앵커사업단장</u> (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③(생략) ④운영지원본부에는 <u>행정지원센터</u> , 성과관리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를 둔다.	제5조(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운영지원본부에는 <u>운영지원센터</u> , 성과관리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를 둔다.
제3장 업무	제3장 업무
제1절 특성화인재양성본부	제1절 특성화인재양성본부
제11조의2(특성화AI교육지원센터) 특성화AI교육지원센터는 <u>RISE사업단</u> 의 특성화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생략)	제11조의2(특성화AI교육지원센터) 특성화AI교육지원센터는 <u>앵커사업단</u> 의 특성화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현행과 같음)
제3절 운영지원본부	제3절 운영지원본부
제16조(<u>행정지원센터</u>) <u>행정지원센터</u>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생략) 4. <u>RISE 위원회</u> , <u>RISE 운영위원회</u> , 상생협의회 운영 지원	제16조(<u>운영지원센터</u>) <u>운영지원센터</u>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현행과 같음) 4. <u>앵커 위원회</u> , <u>앵커 운영위원회</u> , 상생협의회 운영 지원

현 행	개 정 (안)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4장 위원회	제4장 위원회
제21조(<u>RISE 위원회</u>) ①<u>RISE사업</u>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RISE 위원회</u>를 둔다. 1. <u>RISE사업</u> 종합계획 수립 2. <u>RISE사업</u>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3. <u>RISE사업</u> 정책 및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4. (생략) ②<u>RISE 위원회</u>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산학협력단장, <u>RISE사업단장</u>,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생략) ④<u>RISE 위원회</u>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운영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⑤<u>RISE 위원회</u>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u>앵커 위원회</u>) ①<u>앵커사업</u>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앵커위원회</u>를 둔다. 1. <u>앵커사업</u> 종합계획 수립 2. <u>앵커사업</u>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3. <u>앵커사업</u> 정책 및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4. (현행과 같음) ②<u>앵커위원회</u>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산학협력단장, <u>앵커사업단장</u>,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u>앵커위원회</u>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운영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⑤<u>앵커위원회</u>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u>RISE 운영위원회</u>) ①<u>RISE사업</u>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RISE 운영위원회</u>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 (생략) 3. 사업단, 전담조직, 지원조직 간의 <u>RISE사업</u>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6. (생략) ②<u>RISE 운영위원회</u>는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생략) ④<u>RISE 운영위원회</u>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⑤<u>RISE 운영위원회</u>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u>앵커운영위원회</u>) ①<u>앵커사업</u>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앵커운영위원회</u>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사업단, 전담조직, 지원조직 간의 <u>앵커사업</u>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6. (현행과 같음) ②<u>앵커운영위원회</u>는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u>앵커운영위원회</u>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u>운영지원센터장</u>으로 한다. ⑤<u>앵커운영위원회</u>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u>상생협의회</u>) ①<u>RISE사업</u> 지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u>RISE사업</u>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생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4. (생략) ②~③ (생략)	제23조(<u>상생협의회</u>) ①<u>앵커사업</u> 지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u>앵커사업</u>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생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 상생협의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지원센터장 으로 한다.	④ 상생협의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운영지원센터장 으로 한다.
제24조(사업성과관리위원회) ① RISE사업 사업성과관리 및 성과 점검, 환류 성과 창출을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RISE사업 실행과제 성과분석 2. RISE사업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성과관리 3. RISE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자문 4. (생략) ②~④(생략)	제24조(사업성과관리위원회) ① 앵커사업 사업성과관리 및 성과 점검, 환류 성과 창출을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앵커사업 실행과제 성과분석 2. 앵커사업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성과관리 3. 앵커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자문 4. (현행과 같음) ②~④(현행과 같음)
제25조(자체평가위원회) ① RISE사업 이행률과 산학연 협력 사업 수행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RISE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RISE사업 평가지표 개발 3. RISE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4. (생략) ②~④(생략)	제25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앵커사업 이행률과 산학연 협력 사업 수행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앵커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앵커사업 평가지표 개발 3. 앵커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4. (현행과 같음) ②~④(현행과 같음)
제5장 기타	제5장 기타
제24조(포상) ① RISE사업 수행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해 중앙정부 RISE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생략)	제26조(포상) ① 앵커사업 수행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해 중앙정부 앵커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나 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진천RISE사업단 운영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진천RISE사업단	관련부서	기획팀, 진천RISE사업단내 부서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교육부 및 충청북도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정책 전환에 따라 사업단 명칭과 조직체계를 정책 방향에 맞게 정비 • 유사 기능 조직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성 및 행정 일관성 확보																																																					
관련근거 (관계법령)	•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계획에 따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개편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사업단 명칭을 「진천RISE사업단」에서 「진천앵커사업단」으로 변경 - 규정전문의 ‘진천RISE’에서 ‘진천앵커’로 일괄 개정 - 제2장 조직, 제3장업무 : 제5조 제9조 - 주요 조직 개편 내용 참고																																																					
	<진천앵커사업단 주요 조직 개편 내용>																																																					
	1. 사업단 명칭변경																																																					
	<table><tr><td>변경 前</td><td>변경 後</td></tr><tr><td>진천RISE사업단</td><td>진천앵커사업단</td></tr></table>			변경 前	변경 後	진천RISE사업단	진천앵커사업단																																															
	변경 前	변경 後																																																				
	진천RISE사업단	진천앵커사업단																																																				
	2. 진천앵커사업단 하부 기관 명칭 변경																																																					
	<table><tr><td>구분</td><td>변경 前</td><td>변경 後</td><td>비고</td></tr><tr><td rowspan="10">진천앵커 사업운영 본부</td><td>혁신기획센터</td><td>혁신기획센터</td><td>유지</td></tr><tr><td>지역·기업협업센터</td><td rowspan="3">지역정주·현장실습 지원센터</td><td rowspan="3">유사 기능 조직 통합</td></tr><tr><td>현장실습지원센터</td></tr><tr><td>지역정주지원센터</td></tr><tr><td>스포츠츠센터</td><td>스포츠츠센터</td><td>유지</td></tr><tr><td>생애전환센터</td><td>생애전환센터</td><td>유지</td></tr><tr><td>우석다문화센터</td><td>우석다문화센터</td><td>유지</td></tr><tr><td>스포츠브랜딩센터</td><td>스포츠브랜딩센터</td><td>유지</td></tr><tr><td>EDUAIR-BIO센터</td><td>EDUAIR-BIO센터</td><td>유지</td></tr><tr><td>CPTED·AI공공안전센터</td><td>CPTED·AI공공안전센터</td><td>유지</td></tr><tr><td rowspan="5">진천앵커 사업관리 본부</td><td>충북공유대학팀</td><td>충북공유대학팀</td><td>유지</td></tr><tr><td>푸드테크팀</td><td>푸드테크팀</td><td>유지</td></tr><tr><td>K유학생통합연구팀</td><td>K유학생통합연구팀</td><td>유지</td></tr><tr><td>통합관리센터</td><td>행정관리센터</td><td>명칭 변경</td></tr><tr><td>기획예산관리센터</td><td>예산관리센터</td><td>명칭 변경</td></tr><tr><td></td><td>성과관리센터</td><td>사업성과관리센터</td><td>명칭 변경</td></tr></table>			구분	변경 前	변경 後	비고	진천앵커 사업운영 본부	혁신기획센터	혁신기획센터	유지	지역·기업협업센터	지역정주·현장실습 지원센터	유사 기능 조직 통합	현장실습지원센터	지역정주지원센터	스포츠츠센터	스포츠츠센터	유지	생애전환센터	생애전환센터	유지	우석다문화센터	우석다문화센터	유지	스포츠브랜딩센터	스포츠브랜딩센터	유지	EDUAIR-BIO센터	EDUAIR-BIO센터	유지	CPTED·AI공공안전센터	CPTED·AI공공안전센터	유지	진천앵커 사업관리 본부	충북공유대학팀	충북공유대학팀	유지	푸드테크팀	푸드테크팀	유지	K유학생통합연구팀	K유학생통합연구팀	유지	통합관리센터	행정관리센터	명칭 변경	기획예산관리센터	예산관리센터	명칭 변경		성과관리센터	사업성과관리센터	명칭 변경
	구분	변경 前	변경 後	비고																																																		
	진천앵커 사업운영 본부	혁신기획센터	혁신기획센터	유지																																																		
지역·기업협업센터		지역정주·현장실습 지원센터	유사 기능 조직 통합																																																			
현장실습지원센터																																																						
지역정주지원센터																																																						
스포츠츠센터		스포츠츠센터	유지																																																			
생애전환센터		생애전환센터	유지																																																			
우석다문화센터		우석다문화센터	유지																																																			
스포츠브랜딩센터		스포츠브랜딩센터	유지																																																			
EDUAIR-BIO센터		EDUAIR-BIO센터	유지																																																			
CPTED·AI공공안전센터		CPTED·AI공공안전센터	유지																																																			
진천앵커 사업관리 본부	충북공유대학팀	충북공유대학팀	유지																																																			
	푸드테크팀	푸드테크팀	유지																																																			
	K유학생통합연구팀	K유학생통합연구팀	유지																																																			
	통합관리센터	행정관리센터	명칭 변경																																																			
	기획예산관리센터	예산관리센터	명칭 변경																																																			
	성과관리센터	사업성과관리센터	명칭 변경																																																			
3. 진천앵커사업단 하부 위원회 명칭 변경																																																						
<table><tr><td>기존 명칭</td><td>변경 명칭</td><td>비고</td></tr><tr><td>RISE 위원회</td><td>앵커위원회</td><td>명칭 변경</td></tr><tr><td>RISE 운영위원회</td><td>앵커운영위원회</td><td>명칭 변경</td></tr><tr><td>상생협의회</td><td>상생협의회</td><td>유지</td></tr><tr><td>자체점검위원회</td><td>자체점검위원회</td><td>유지</td></tr><tr><td>자체평가위원회</td><td>자체평가위원회</td><td>유지</td></tr></table>			기존 명칭	변경 명칭	비고	RISE 위원회	앵커위원회	명칭 변경	RISE 운영위원회	앵커운영위원회	명칭 변경	상생협의회	상생협의회	유지	자체점검위원회	자체점검위원회	유지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유지																																		
기존 명칭	변경 명칭	비고																																																				
RISE 위원회	앵커위원회	명칭 변경																																																				
RISE 운영위원회	앵커운영위원회	명칭 변경																																																				
상생협의회	상생협의회	유지																																																				
자체점검위원회	자체점검위원회	유지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유지																																																				
기대효과	• 교육부(충청북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 사업단 명칭 및 조직체계를 규정에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유사 기능 조직 통합을 통한 업무 연계성 강화 및 지역혁신 지원체계 고도화 • 개편된 조직체계에 맞는 규정 정비를 통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신로도 향상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사항 없음																																																			
첨부자료	• 「우석대학교 진천RISE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우석대학교 진천RISE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우석대학교 <u>진천RISE사업단</u> 운영 규정	우석대학교 <u>진천앵커사업단</u>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u>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u>」에 따라 운영되는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의 <u>RISE사업단</u>(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와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본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부 및 충청북도 <u>RISE 사업</u> 2. 지역산업-대학정책 상생연계 3. 권역별 일자리 인재 혁신 생태계 조성 4. 지역균형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5. 지역문제 해결 공유 협업문화 확산 6. 기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u>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앵커)</u>」에 따라 운영되는 우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u>진천앵커사업단</u>(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와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u>앵커사업</u> 2. 지역산업-대학정책 상생연계 3. 권역별 일자리 인재 혁신 생태계 조성 4. 지역균형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5. 지역문제 해결 공유 협업문화 확산 6. 기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단장 등) ①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u>진천RISE사업단장</u>(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단장을 보좌하여 사업단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본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5조(구성) ①사업단에는 <u>진천RISE사업운영본부</u>, <u>진천RISE사업관리본부</u>를 둔다. ②<u>진천RISE</u>사업운영본부에는 혁신기획센터, <u>지역·기업협업센터</u>, <u>현장실습지원센터</u>, <u>지역정주지원센터</u>, AI스포츠센터, 생애전환센터, 우석다문화센터,	제 2 장 조 직 제4조(단장 등) ①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u>진천앵커사업단장</u>(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단장을 보좌하여 사업단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본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5조(구성) ①사업단에는 <u>진천앵커사업운영본부</u>, <u>진천앵커사업관리본부</u>를 둔다. ②<u>진천앵커</u>사업운영본부에는 혁신기획센터, <u>지역정주·현장실습지원센터</u>, AI스포츠센터, 생애전환센터, 우석다문화센터, 스포츠브랜딩센터,

현행	개정(안)
스포츠브랜딩센터, EDUAIR-BIO센터, CPTED·AI공공안전센터, 충북공유대학팀, 푸드테크팀, K유학생통합연구팀을 둔다. (개정 2026.2.13.) ③ <u>진천RISE사업관리본부</u>에는 <u>통합관리센터, 기획예산관리센터, 성과관리센터</u>를 둔다. 제6조(산업체전문교수) 대학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위해 산업체 전문교수를 둘 수 있으며, 산업체 전문교수는 산업체에 2년 이상 재직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EDUAIR-BIO센터, CPTED·AI공공안전센터, 충북공유대학팀, 푸드테크팀, K유학생통합연구팀을 둔다. (개정 2026.2.13.) ③ <u>진천앵커사업관리본부</u>에는 <u>행정관리센터, 예산관리센터, 사업성과관리센터</u>를 둔다. 제6조(산업체전문교수) (현행과 같음)
제 3 장 업 무	제 3 장 업 무
제 1 절 <u>진천RISE사업운영본부</u> 제7조(<u>진천RISE사업운영본부장</u>) <u>진천RISE사업운영본부장</u>은 <u>진천RISE사업운영본부</u>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u>혁신기획센터</u>) 혁신기획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진천RISE사업</u>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기획 수립 2. 교육혁신 및 지역산업 연계형 사업모델 개발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9조(<u>지역·기업협업센터</u>) <u>지역·기업협업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 협력 기반 지역기업 맞춤형 공동사업 추진 2. 지역산업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및 기업협업체계 구축 3. <u>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u> <u><호 신설></u> <u><호 신설></u> <u><호 신설></u> <u><호 신설></u> <u><호 신설></u>	제7조(<u>진천앵커사업운영본부장</u>) <u>진천앵커사업운영본부장</u>은 <u>진천앵커사업운영본부</u>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u>혁신기획센터</u>) 혁신기획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진천앵커사업</u>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기획 수립 2. 교육혁신 및 지역산업 연계형 사업모델 개발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9조(<u>지역정주·현장실습지원센터</u>) <u>지역정주·현장실습지원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 협력 기반 지역기업 맞춤형 공동사업 추진 2. 지역산업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및 기업협업체계 구축 3. <u>지역 산업체 및 기관과 연계한 표준현장실습 운영</u> 4. <u>고교·대학 연계형 현장기반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u> 5. <u>진로·취업·창업 관련 지산학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업무</u> 6. <u>진로·취업·창업 지도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u> 7. <u>취·창업동아리 지원에 관한 업무</u> 8. <u>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u>

현행	개정(안)
제10조(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업체 및 기관과 연계한 표준현장실습 운영 2. 고교·대학 연계형 현장기반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11조(지역정주지원센터) 지역정주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취업·창업 관련 지산학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진로·취업·창업 지도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3. 취·창업동아리 지원에 관한 업무 4.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12조(A이스포츠센터) A이스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산업(진천형 K-스포츠 AI 사이언스) 및 춤형 융합인재 양성 2. K-스포츠 AI 사이언스 허브 조성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10조로 이동] 제13조(생애전환센터) 생애전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산업 기반 지속가능한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2. 성인학습자의 경력개발과 직업전환 지원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11조로 이동] 제14조(우석다문화센터) 우석다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맞춤형 다문화 평생교육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2. 상생하는 다문화 공동체 구축 및 지산학연 협력 체계 강화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12조로 이동] 제15조(스포츠브랜딩센터) 스포츠브랜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자체·지역주민의 현안문제 해결	제10조(현장실습지원센터) <조 삭제> 제11조(지역정주지원센터) <조 삭제> 제10조(A이스포츠센터) A이스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현행과 같음) [조 번호 변경] 제11조(생애전환센터) 생애전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12조(우석다문화센터) 우석다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13조(스포츠브랜딩센터) 스포츠브랜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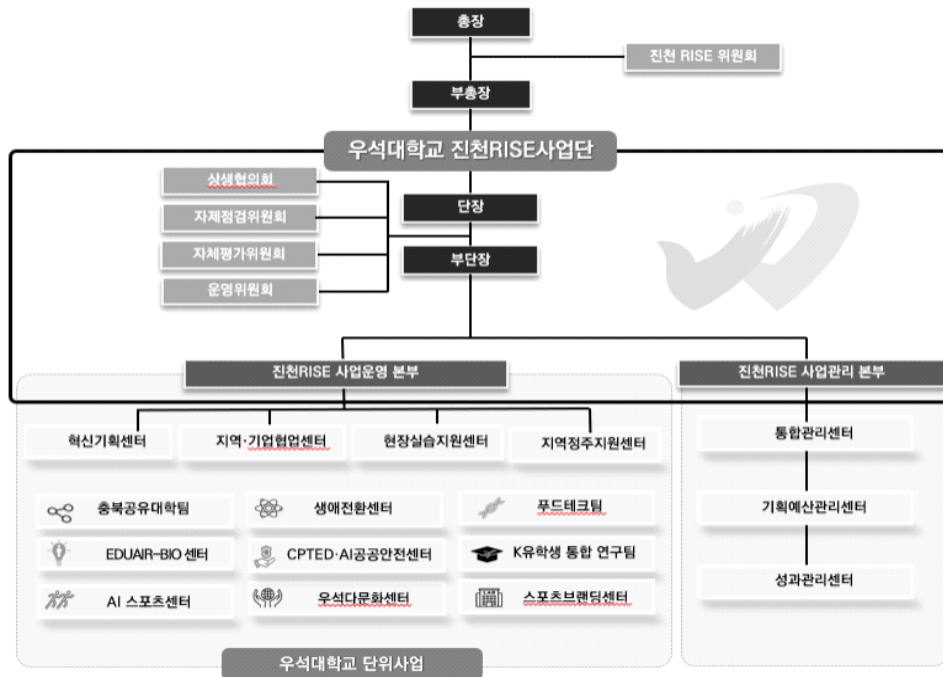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2. 스포츠특화도시 브랜드 마케팅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13조로 이동] 제16조(EDUAIR-BIO센터) EDUAIR-BIO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I·DX 기반 바이오교육혁신 및 핵심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 2.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및 현장연계 프로그램 운영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14조로 이동] 제17조(CPTED·AI센터) CPTED·AI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 및 공공안전 AI융합 프로그램 운영 2. 생활안전·스마트시티 분야의 교육·체험 콘텐츠 개발 및 확산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15조로 이동] 제18조(충북공유대학팀) 충북공유대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북 3대 전략산업(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2. 생활안전·스마트시티 분야의 교육·체험 콘텐츠 개발 및 확산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16조로 이동] 제19조(푸드테크팀) 푸드테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통한 R&BD 수행 2. 지역 전략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기술사업화 실현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17조로 이동] 제20조(K유학생통합연구팀) K유학생통합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학생 현장 밀착형 교육 운영 2. 지역 정착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18조로 이동]	제14조(EDUAIR-BIO센터) EDUAIR-BIO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15조(CPTED·AI센터) CPTED·AI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16조(충북공유대학팀) 충북공유대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17조(푸드테크팀) 푸드테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18조(K유학생통합연구팀) K유학생통합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 2 절 <u>진천RISE사업관리본부</u>	제 2 절 <u>진천앵커사업관리본부</u>

현행	개정(안)
<u>제21조(진천RISE사업관리본부장) 진천RISE사업관리본부장</u>은 단장을 보좌하여 <u>진천RISE사업관리본부</u>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로 이동] <u>제22조(통합관리센터) 통합관리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의 행정·인사·정보·소통·지원 2. <u>RISE 운영위원회</u> 운영에 관한 업무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20조로 이동] <u>제23조(기획예산관리센터) 기획예산관리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의 예산·기획·투자·조정·효율 2. 사업단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집행을 모니터링, 투자·성과비교 분석 3. <u>RISE 위원회</u>,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21조로 이동] <u>제24조(성과관리센터) 성과관리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화 성과·지표·데이터·평가·품질관리 2.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운영 성과관리 3. 각 사업의 컨설팅, 세미나, 홍보 등 운영 4. <u>자체평가·심의위원회, 사업성과관리위원회</u> 운영에 관한 업무 5.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22조로 이동]	<u>제19조(진천앵커사업관리본부장) 진천앵커사업관리본부장</u>은 단장을 보좌하여 <u>진천앵커사업관리본부</u>의 업무를 총괄한다. <u>제20조(행정관리센터) 행정관리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의 행정·인사·정보·소통·지원 2. <u>앵커 운영위원회</u> 운영에 관한 업무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u>제21조(예산관리센터) 예산관리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의 예산·기획·투자·조정·효율 2. 사업단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집행을 모니터링, 투자·성과비교 분석 3. <u>앵커 위원회</u>,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u>제22조(사업성과관리센터) 사업성과관리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화 성과·지표·데이터·평가·품질관리 2.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운영 성과관리 3. 각 사업의 컨설팅, 세미나, 홍보 등 운영 4. <u>자체평가위원회, 자체점검위원회</u> 운영에 관한 업무 5.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 4 장 위원회 <u>제25조(RISE 위원회) ①진천RISE사업</u>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진천RISE</u> 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u>RISE사업</u> 계획 수립 및 조정 2. <u>RISE사업</u> 예산 및 결산 3. <u>RISE사업</u> 정책 및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4.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u>진천RISE</u>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진천부총장, 교학처장, 지산학융합원장, <u>진천RISE</u>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위원회 <u>제23조(앵커위원회) ①진천앵커사업</u>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진천앵커위원회</u>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u>앵커사업</u> 계획 수립 및 조정 2. <u>앵커사업</u> 예산 및 결산 3. <u>앵커사업</u> 정책 및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4.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u>진천앵커</u>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진천부총장, 교학처장, 지산학융합원장, <u>진천앵커사업단장</u>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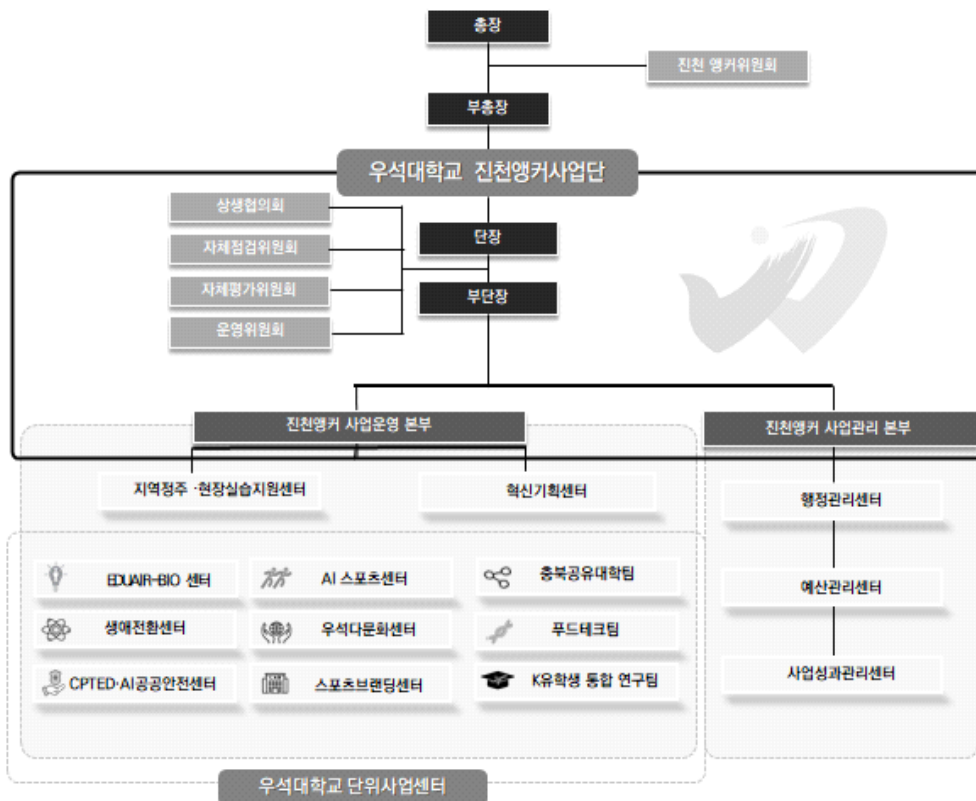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④ <u>진천RISE</u>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u>기획예산관리센터</u> 장으로 한다. [↗제23조로 이동] 제26조(RISE 운영위원회) ① <u>RISE사업</u>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RISE 운영위원회</u>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2. 행·재정 지원 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예산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5.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u>RISE 운영위원회</u>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15인 내외(교내위원, 교외위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u>RISE 운영위원회</u>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u>통합관리센터</u> 직원으로 한다. ⑤ <u>RISE 운영위원회</u>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로 이동] 제27조(상생협의회) ① <u>진천RISE사업</u> 지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u>RISE 사업</u>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생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대학-지자체-지역산업체 간 파트너십 구축 2. 지역 현안 문제 해결 3. 지역사회 공헌 활동 4.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② 상생협의회는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10인 내외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상생협의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u>기획예산관리센터</u> 직원으로 한다. [↗제25조로 이동] 제28조(자체점검위원회) ① <u>진천RISE사업</u> 사업성과관리 및 성과 점검, 환류 성과 창출을 위하여 자체점검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각호와 같다. (개정 2026.2.13.) 1. <u>RISE사업</u> 실행과제 성과분석 2. <u>RISE사업</u>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성과	④ <u>진천앵커 위원회</u>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u>예산관리센터장</u>으로 한다. 제24조(앵커운영위원회) ① <u>앵커사업</u>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앵커운영위원회</u>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6 (현행과 같음) ② <u>앵커운영위원회</u>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15인 내외(교내위원, 교외위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u>앵커운영위원회</u>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u>행정관리센터</u> 직원으로 한다. ⑤ <u>앵커운영위원회</u>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상생협의회) ① <u>진천앵커사업</u> 지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u>앵커 사업</u>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생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생협의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u>예산관리센터</u> 직원으로 한다. 제26조(자체점검위원회) ① <u>진천앵커사업</u> 사업성과관리 및 성과 점검, 환류 성과 창출을 위하여 자체점검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u>앵커사업</u> 실행과제 성과분석 2. <u>앵커사업</u>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성과

현행	개정(안)
관리 3. <u>RISE사업</u>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자문 4. 기타 각호에 부수된 업무 ② 자체점검위원회는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10인 내외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자체점검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성과관리센터 직원으로 한다. [↗제26조로 이동] 제29조(자체평가위원회) ① <u>진천RISE사업</u> 이행률과 산학연협력 사업 수행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u>RISE사업</u>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u>RISE사업</u> 평가지표 개발 3. <u>RISE사업</u>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4. 기타 각호에 부수된 업무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10인 내외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성과관리센터 직원으로 한다. [↗제27조로 이동] 제 5 장 기 타 제30조(포상) ① <u>진천RISE</u> 사업 수행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해 중앙정부 <u>RISE</u>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에 대한 계획은 매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8조로 이동]	관리 3. <u>앵커사업</u>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자문 4. 기타 각호에 부수된 업무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u>진천앵커사업</u> 이행률과 산학연협력 사업 수행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u>앵커사업</u>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u>앵커사업</u> 평가지표 개발 3. <u>앵커사업</u>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4. 기타 각호에 부수된 업무 ②~③ (현행과 같음) 제 5 장 기 타 제28조(포상) ① <u>진천앵커사업</u> 수행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해 중앙정부 <u>앵커사업</u> 규정에 근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에 대한 계획은 매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u><신설></u>	<u>부 칙</u> <u>제1조(시행일)</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u>제2조(경과조치)</u>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나 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현행 기구표>



<개편(안) 기구표>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교직원보수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예산팀	관련부서	총무팀
부서간 협의 결과	• 개정(안)대로 협의 완료 및 특이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심의 해당		
대학평의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교직원보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보전수당, 학생지도수당, 위원회수당 및 성과급 규정을 조문별로 체계화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교직원보수규정」의 보전수당, 학생지도수당, 위원회수당 및 성과급 규정을 각각 독립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 체계를 정비함 • 조 신설에 따른 조 번호 이동으로 규정 체계를 정비		
기대효과	• 각종 수당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0조(초과근무수당) (삭제 2009.2.12.) <u><조 신설></u> <u><조 신설></u> <u><조 신설></u>	제20조(초과근무수당) (현행과 같음) <u>제21조(보전수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전수당을 별표 13과 같이 지급한다.</u> <u>제22조(학생지도수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생지도수당을 별표 14와 같이 지급한다. 단, 자율연수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u> <u>제23조(위원회수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수당을 별표 15와 같이 지급한다.</u>
<u>제21조(기타수당) ①</u> 수행업무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사수당 : 교내외 각종행사를 수행한 교직원 2. 특별강의수당 : 특별강의·강연 등을 수행한 교직원 3. 심사평가수당 : 각종시험출제, 감독, 대학평가, 정부재정지원사업, 특성화사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 4. 입학수당 : 입시업무를 수행한 교직원 5. 진료수당 : 의료관련 면허소지자로서 진료관련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 6. 재정기여수당 : 재정(예산절감, 발전기금, 순수외국인 입학, 편입학, 재입학 등) 확충에 기여한 교직원 7. <삭제 2026.6.30.> 8. 재해공로수당 : 재난대비 비상 대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한 교직원 9. 감사수당 :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 10. 특별수당 :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②<삭제 2020.6.10.> (개정 2011.1.24., 2014.1.1.) ③(삭제 2014.1.1.) <u>④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전수당을 별표 13과 같이 지급한다.</u> <u>⑤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생지도수당을 별표 14와 같이 지급한다. 단, 자율연수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u> <u>⑥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수당을 별표 15와 같이 지급한다.</u> ⑦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⑧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급되는 수당은 해당 사업규정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지침이 없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지급한	<u>제24조(기타수당) ①</u>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u>6. <삭제></u> 7.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④ <삭제></u> <u>⑤ <삭제></u> <u>⑥ <삭제></u> ⑦ ~ ⑨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다. ⑨기타수당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u><조 신설></u>	<u>제24조의2(성과급)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22조(보수지급일) (내용 생략) <조 번호 이동></u> <u>제23조(보수계산) (내용 생략) <조 번호 이동></u> <u>제24조(보수의 감액) (내용 생략) <조 번호 이동></u> <u>제25조(정계처분기간의 보수의 감액) (내용 생략) <조 번호 이동></u> <u>제26조(점직보수) (내용 생략) <조 번호 이동></u> <u>제27조(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내용 생략) <조 번호 이동></u> <u>제28조(수습기간중의 보수) (내용 생략) <조 번호 이동></u> <u>제29조(우석대의료원 소속 전공의 및 직원의 보수) (내용 생략) <조 번호 이동></u> <u>제30조(시행) (내용 생략) <조 번호 이동></u> <u>제31조(세부사항) (내용 생략) <조 번호 이동></u>	<u>제25조(보수지급일) (내용은 현행과 같음)</u> <u>제26조(보수계산) (내용은 현행과 같음)</u> <u>제27조(보수의 감액) (내용은 현행과 같음)</u> <u>제28조(정계처분기간의 보수의 감액) (내용은 현행과 같음)</u> <u>제29조(점직보수) (내용은 현행과 같음)</u> <u>제30조(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내용은 현행과 같음)</u> <u>제31조(수습기간중의 보수) (내용은 현행과 같음)</u> <u>제32조(우석대의료원 소속 전공의 및 직원의 보수) (내용은 현행과 같음)</u> <u>제33조(시행) (내용은 현행과 같음)</u> <u>제34조(세부사항) (내용은 현행과 같음)</u>
<u><신설></u>	<u>부칙(학교법인 우석학원- (0000.00.00.)호</u> <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u>

「교직원성과급지급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직원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는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급” 이라 함은 본교 발전과 경쟁력 제고,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교직원에게 성과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부서” 라 함은 본교 각 부서 및 대학원, 학과(부),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TF팀, 사업단, 기타 각종 기관 등을 말한다. 3. “교직원” 이라 함은 본교 재직 중인 교원(전임교원 및 비전임 교원), 직원, 조교 등을 말한다. 제4조(성과급의 종류) 성과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성과급: 예산의 절감, 사업 및 업무 성과, 제안 및 창안 등 제도개선, 수입증대 등 경영개선 및 성과 창출에 공헌한 부서 또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2. 특별성과급: 본교 명예 선양, 각종 업무성과 창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특별 사안 발생 시 부서 또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u>〈항 신설〉</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직원에게 <u>「교직원보수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u> 지급하는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성과급의 종류) 성과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성과급: 예산의 절감, 사업 및 업무 성과, 제안 및 창안 등 제도개선, 수입증대 등 경영개선 및 성과 창출에 공헌한 부서 또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2. 특별성과급: 본교 명예 선양, 각종 업무성과 창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특별 사안 발생 시 부서 또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3. <u>근무평가성과급: 매년 상, 하반기 정기인사평정 결과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u>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학 위 종 별				학 위 종 별			
1. 일반대학원				1. 일반대학원			
계열	학 과	학 위 종 별		계열	학 과	학 위 종 별	
		석 사	박 사			석 사	박 사
인문 사회	-	-	-	인문 사회	-	-	-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글 로 벌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글 로 벌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	-	-		-	-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심 리 운 동 학 과	심 리 운 동 학 석 사	심 리 운 동 학 박 사		심 리 운 동 학 과	심 리 운 동 학 석 사	심 리 운 동 학 박 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심 리 학 과	심 리 학 석 사	심 리 학 박 사		심 리 학 과	심 리 학 석 사	심 리 학 박 사
	경 영 학 과	-	경 영 학 박 사 예 술 학 박 사		경 영 학 과	-	경 영 학 박 사 예 술 학 박 사
	관 광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박 사		관 광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박 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경제학석사 경 영 학 석 사	사회적경제학박사 경 영 학 박 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경제학석사 경 영 학 석 사	사회적경제학박사 경 영 학 박 사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석 사	소 방 방 재 학 박 사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석 사	소 방 방 재 학 박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과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석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박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과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석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박 사
	국 제 교 육 문 화 학 과	-	교 육 학 박 사 문 학 박 사		국 제 교 육 문 화 학 과	-	교 육 학 박 사 문 학 박 사
	예 술 경 영 학 과	예 술 경 영 학 석 사			예 술 경 영 학 과	예 술 경 영 학 석 사	
	놀 이 심 리 재 활 학 과	놀 이 심 리 재 활 학 석 사	문 학 박 사		놀 이 심 리 재 활 학 과	놀 이 심 리 재 활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학 석 사	한 국 어 교 육 학 박 사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학 석 사	한 국 어 교 육 학 박 사
	외 식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경 영 학 박 사		외 식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경 영 학 박 사
	관 광 문 화 경 영 학 과	관 광 학 석 사	-		관 광 문 화 경 영 학 과	관 광 학 석 사	-
	군 사 학 과	-	군 사 학 박 사		군 사 학 과	-	군 사 학 박 사
	ESG·공공정책학과	ESG경영학석사 공공정책학석사	ESG경영학박사 공공정책학박사		ESG·공공정책학과	ESG경영학석사 공공정책학석사	ESG경영학박사 공공정책학박사
자연 과학	약 학 과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자연 과학	약 학 과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생 명 과 학 과	이 학 석 사	-		생 명 과 학 과	이 학 석 사	-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한 약 학 과	한 약 학 석 사	한 약 학 박 사		한 약 학 과	한 약 학 석 사	한 약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가 정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가 정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간 호 학 석 사	-
	재 활 학 과	재 활 학 석 사	-		재 활 학 과	재 활 학 석 사	-
	작 업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		작 업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
	물 리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물 리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현 행				개 정 (안)			
공학	전 기 전 자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공학	전 기 전 자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동 아 시 아 조 경 학 과	공 학 석 사	-		동 아 시 아 조 경 학 과	공 학 석 사	-
		(신 규)			동 아 시 아 조 경 학 과	신환경예술학사	
	컴 퓨 터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컴 퓨 터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 설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 설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설융합시스템학과	-	공 학 박 사		건설융합시스템학과	-	공 학 박 사
	조 경 학 과	-	공 학 박 사		조 경 학 과	-	공 학 박 사
	자 동 차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자 동 차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제 약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제 약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제약·화장품공학과	-	공 학 박 사		제약·화장품공학과	-	공 학 박 사
	재 난 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재 난 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소 방 · 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소 방 · 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수소모빌리티공학과	공 학 석 사	-		수소모빌리티공학과	공 학 석 사	-
의학	수소에너지공학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의학	수소에너지공학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예능	-	-	-	예능	-	-	-
	-	-	-		-	-	-
	태 권 도 학 과	체육학박사	체 육 학 박 사		태 권 도 학 과	체육학박사	체 육 학 박 사
	스 포 츠 과 학 과	스포츠과학석사	스�포츠과학박사		스 포 츠 과 학 과	스포츠과학석사	스�포츠과학박사
	예 술 학 과	예 술 학 석 사			예 술 학 과	예 술 학 석 사	
	스 포 츠 융 합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스 포 츠 융 합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입학관리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4년제 대학(본교 포함)의 2학년 수료(60학점) 학생이 2027학년도 일반 편입에 지원하는 경우, 지원 자격을 미충족하게 되므로 학점 완화가 필요함. ● 반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70학점 이상을 이수하므로 영향이 없음.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4년제 대학 또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산업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6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기대효과	● 본교 학사 기준과 편입학 전형 기준을 통일하여 규정 간 혼선 제거 ●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2학년 수료 학생의 편입학 지원 자격 충족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편입학의 자격) ①학칙 제23조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하는 편입(이하 ‘일반편입’이라 한다)에 따른 3학년 일반 편입생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년제 대학 또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산업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제2조(편입학의 자격) ①학칙 제23조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하는 편입(이하 ‘일반편입’이라 한다)에 따른 3학년 일반 편입생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년제 대학 또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산업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6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u>〈신설〉</u>	<u>부 칙</u>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기획팀		관련부서	대학전체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직제 변경으로 승인 사항에 해당함.			
대학평의원회	● 해당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교육부, 정책 개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2026.4.)에 대응한 사업단 명칭 변경 필요 ● ‘산학협력’과 ‘연구행정 관리’라는 양대 축을 기준으로 기능을 명확히 분화하여 부단장별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교육부 정책 변경 - 국정과제 55-2: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동반성장을 위한 RISE체계 재구조화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2026.4.) ● 교무위원회 논의 (2026.07.15.): 원안 승인 - RISE사업단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 산학협력부단장제도 개편 (산학협력부단장, 연구지원부단장)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5조 총장 직속기관 명칭 변경 - 「RISE사업단」 → 「앵커사업단」으로 변경 - 「진천RISE사업단」 → 「진천앵커사업단」으로 변경 ● 제16조 총장 직속기관장 명칭 변경 - 「RISE사업단장」에서 「앵커사업단장」으로 변경 - 「진천RISE사업단장」에서 「진천앵커사업단장」으로 변경 ● 제20조의5조 내지 제20조의6조 관련 조제목 및 사업단 변경 - 「RISE사업단」 → 「앵커사업단」으로 변경 - 「진천RISE사업단」 → 「진천앵커사업단」으로 변경 ● 제27조(단장, 부단장 등) → 제27조(단장) 조 명칭 변경 - 기존 부단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 조문으로 분리 ● 제27조의2(부단장) 신설 - 산학협력부단장과 연구지원부단장의 2부단장 체계 도입 - 각 부단장의 관할 업무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 - 부단장 임용 자격 및 외부전문가 임용 근거 마련 - 단장 직무대행 규정 명확화 ● 제28조(조직) - 제27조 제4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이전함			
기대효과	● 앵커 체계 전면 대응, 5급3특 초광역·성과관리 체계 확보를 통한 정책 대응력 강화 ● 사업 추진력: 3대 핵심 영역(지산학연·지역인재·직업평생교육) 통합 관리로 시너지 창출 ● 전문성 강화 및 연구 경쟁력 제고 ● 재정지원사업 경쟁력 확보 및 대외협력 확대 ● 조직 운영 효율성 및 의사결정 신속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진행중)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직제규정 개정(안) 전문 1부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5조(총장 직속기관)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 홍보실, 인권센터, <u>RISE사업단</u>, <u>진천RISE사업단</u>,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교육혁신본부, 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 새만금연구단을 두고, 진천부총장 직속으로 지산학융합원을 둔다. (개정 2011.1.3., 2011.6.28., 2011.10.27., 2012.5.15., 2013.2.1., 2014.8.26., 2014.9.11., 2014.10.21., 2014.11.6., 2016.4.28., 2017.4.27., 2017.8.30., 2018.6.28., 2018.12.6., 2020.1.16., 2022.3.22., 2022.6.30., 2022.12.28., 2024.6.5., 2025.2.27., 2025.6.26., 2026.2.27.)	제5조(총장 직속기관)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 홍보실, 인권센터, <u>앵커사업단</u>, <u>진천앵커사업단</u>,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교육혁신본부, 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 새만금연구단을 두고, 진천부총장 직속으로 지산학융합원을 둔다. (개정 2011.1.3., 2011.6.28., 2011.10.27., 2012.5.15., 2013.2.1., 2014.8.26., 2014.9.11., 2014.10.21., 2014.11.6., 2016.4.28., 2017.4.27., 2017.8.30., 2018.6.28., 2018.12.6., 2020.1.16., 2022.3.22., 2022.6.30., 2022.12.28., 2024.6.5., 2025.2.27., 2025.6.26., 2026.2.27., <u>2026.XX.XX.</u>)
제16조(총장 직속기관장) ①<u>RISE사업단</u>, 대학일자리본부, 교육혁신본부, 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인권센터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u>진천RISE사업단</u>, 새만금연구단, 지산학융합원, 창업지원단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비서실, 홍보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실, 새만금연구단, 인권센터, 글로벌30추진본부, 지산학융합원의 장은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1.6.28., 2012.5.15., 2013.2.1., 2014.8.26., 2014.9.11., 2014.10.21., 2014.11.6., 2016.4.28., 2017.4.27., 2017.7.31., 2017.8.30., 2018.6.28., 2018.12.6., 2020.1.16., 2022.3.22., 2022.6.30., 2022.12.28., 2024.6.5., 2024.8.28., 2024.11.5., 2025.2.27., 2025.4.29., 2025.6.26., 2025.8.26., 2026.2.27.) ②총장 직속기관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12.29., 2018.12.6.) ③(개정 2022.9.22., 2024.2.15., 2024.6.5.) <삭제 2025.2.27.>	제16조(총장 직속기관장) ①<u>앵커사업단</u>, 대학일자리본부, 교육혁신본부, 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인권센터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u>진천앵커사업단</u>, 새만금연구단, 지산학융합원, 창업지원단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비서실, 홍보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실, 새만금연구단, 인권센터, 글로벌30추진본부, 지산학융합원의 장은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1.6.28., 2012.5.15., 2013.2.1., 2014.8.26., 2014.9.11., 2014.10.21., 2014.11.6., 2016.4.28., 2017.4.27., 2017.7.31., 2017.8.30., 2018.6.28., 2018.12.6., 2020.1.16., 2022.3.22., 2022.6.30., 2022.12.28., 2024.6.5., 2024.8.28., 2024.11.5., 2025.2.27., 2025.4.29., 2025.6.26., 2025.8.26., 2026.2.27., <u>2026.XX.XX.</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 5(<u>RISE사업단</u>) <u>RISE사업단</u>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 5(<u>앵커사업단</u>) <u>앵커사업단</u>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u>[조명칭 변경2026.XX.XX.]</u>
제20조의 6(<u>진천RISE사업단</u>) <u>진천RISE사업단</u>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 6(<u>진천앵커사업단</u>) <u>진천앵커사업단</u>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u>[조명칭 변경2026.XX.XX.]</u>

현행	개정
제27조(단장, 부단장 등) ①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2018.12.6.) ②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2.6.) ③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때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2018.12.6.) ②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2.6.) ③ 단장이 결위된 때에는 산학협력부단장, 연구지원부단장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조명칭 변경2026.XX.XX.]
<조 신설>	※ 기획팀(안) ※ 제27조의2 (부단장)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부단장, 연구지원부단장 (이하 통칭 ‘부단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부단장은 산학협력실을 관할하며, 지·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연구지원부단장은 연구지원실을 관할하며, 연구지원 및 연구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④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XX.XX.]
<조 신설>	제27조의2 (부단장)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부단장, 연구지원부단장 (이하 통칭 ‘부단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부단장은 산학협력실 및 지·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연구지원부단장은 연구지원실 및 연구지원 및 연구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④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제28조(조직) ①<삭제 2025.5.28.> ②<삭제 2025.5.28.> ③<삭제>	제28조(조직)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부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6. . .)) 제1조(시행일)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소수집단 학생 지원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소수집단 학생 지원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에 재학 중인 소수집단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수집단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장애 학생
2. 외국인 유학생
3. 다문화가족 학생
4. 북한이탈주민 학생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

제3조(지원범위) 소수집단 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생활과 학습활동에 필요한 지원
2. 학생 상담
3. 진로 지원
4. 소수집단 학생 권익 보호
5. 그 밖에 소수집단 학생의 요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담당부서) 소수집단 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
2. 외국인 유학생: 국제교류처(글로벌교육지원센터, 한국어교육지원센터)
3. 다문화가족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학생복지팀

제5조(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① 대학은 소수집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그들이 학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소수집단 학생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대학은 즉각 이를 조사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필요한 징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③ 소수집단 학생은 인권 침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대학에 신고할 수 있으며, 대학은 신고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대학은 소수집단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6조(모니터링 및 평가) ① 대학은 소수집단 학생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② 소수집단 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매 학년도 소수집단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제7조(운영) 소수집단 학생 지원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수집단 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